

□ 상속 신고절차 및 상속세 신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사망신고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고인(故人)의 주소지 동사무소

- * 사망신고서 3부, 사망진단서 1부, 신고자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 * 사망신고시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재산내역 출력됨 → 7 ~ 20일 이내 결과 나옴

2. 상속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이내

3. 상속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정리

1) 기본 서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1통,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1통,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각1통

2) 재산조회 통합 결과를 보고 해야 할 일

피상속인이 최근 10년이내 사용하였던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 통장 찾을 것
(지금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통장 모두 해당됨)

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예탁금,채권,보험금 등) 잔액 증명 (특히, 보험금 빠지지 않도록 주의)

*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금융자산 입출금 내역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을 조회하여야 하며, 현재는 거래하지 않더라도 10년이내에 거래했던 금융자산 모두 해당됨
(입출금내역서는 은행에 말하여 엑셀파일도 반드시 다운받아 제출)

5)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파악

-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에 상환한 채무 내역
 -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의 주식거래내역
 -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에 처분한 부동산 내역
 -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 ③ ~ ⑤는 세무서에 의뢰하여 확인할 예정이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 퇴직금 수령 내역서

7) 장례비 영수증 및 피상속인 명의 병원비 영수증

4. 기타 처리할 사항

1) 필요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작성

* 분할서를 작성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상속인의 국민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보험금 청구

3) 건강보험 해지신청